

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-5호

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임실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임실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5년 2월 17일

임실군의회 의장



1. 제정이유

임실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체의 원활한 원내활동을 보장하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교섭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나. 교섭단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다. 교섭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·법인 또는 기관·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한: 2025년 2월 22일까지

나. 제출방법: 서면·우편·전자우편·직접방문

- 1) 주 소: (55927)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, 임실군의회(의회사무과)
- 2) 전 화: 063-640-2883, 팩스 063-640-2699
- 3) 전자우편:charity81@korea.kr

4. 제정안: 붙임

임실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3조의2에 따라 임실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교섭단체”란 임실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내에 의정활동을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임실군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이 소속된 정당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구성)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4조(교섭단체의 등록 등) 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

제5조(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) 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 및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붙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.

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.

제6조(교섭단체의 기능)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교류·협력 추진
2.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
3.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
4.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7조(교섭단체의 지원 등) 의장은 제6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교섭단체 등록신청서

「임실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.

☐ 교섭단체 명칭 :

☐ 구성연월일:

☐ 대표의원 인영부

소속 정당	성명	직인	사인

☐ 소속의원 연서·날인명부

연번	소속 정당	의원 성명	서명	인

년 월 일

대표의원

(직인)

임실군의회 의장 귀하

교섭단체 (명칭, 대표의원) 변경 보고

「임실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 (명칭, 대표의원)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□ 변경사항

구 분	당 초	변 경

※ “구분” 란에는 교섭단체의 “명칭변경” 또는 “대표의원 변경” 등을 기재

□ 대표의원 인영부

소속 정당	성 명	직 인	사 인

□ 소속의원 연서·날인명부

연 번	소속 정당	의원 성명	서 명	인

년 월 일

대표의원 (직인)

임실군의회 의장 귀하

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(정당변경) 보고

「임실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□ 이동보고

대 상 의 원		이 동 사 항			비 고
소속정당	성 명	일 자	내 용	사 유	

※ 이동사항 중 “내용” 란에는 “교섭단체 탈퇴”, “신규가입” 등을 기재

□ 정당변경 보고

의원성명	정 당 변 경 사 항			비 고
	당초 정당명	변경 정당명	변 경 일 자	

년 월 일

대표의원 (직인)

임실군의회 의장 귀하

당적 취득(소속정당 변경) 보고

「임실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2항에 따라 당적 취득(소속정당 변경)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□ 당적 취득보고

의원 성명	당적 취득사항		비 고
	정당명	취득일자	

□ 소속정당 변경보고

의원 성명	정당 변경 사항			비 고
	당초 정당명	변경 정당명	변경일자	

년 월 일

대표의원 (직인)

임실군의회 의장 귀하

임실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-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

□ 『지방자치법』

- 제63조의2(교섭단체)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
-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-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